

高麗時代의 秘書省

裴 賢 淑*

〈目 次〉

緒 言	II. 高麗 秘書省의 變遷과 職官
I. 中國의 秘書省과의 關係	III. 秘書省의 機能 및 秘閣과 御書院과의 關係
1. 北宋의 秘書省	結 言
2. 南宋의 秘書省	

緒 言

高麗 建國(918)에서 부터 光宗(950—975)까지는 建國初創期였으므로 國家를
盤石위에 올릴 整地作業에 힘쓰게 되어 文化政策面에서 볼 때 별로 두드러
진 業績은 없었다. 이 時期의 代表的인 治績을 든다면 中國人 雙冀의 建議
에 의한 科舉와, 다른 하나는 奴婢按檢法을 實施한 것이라 하겠다. 科舉制
度로 因해 書籍의 需要가 增大되었고 圖書의 刊行을 자극하게 되었다. 이
어 成宗에 이르러 記錄上으로는 우리나라 最初의 官立圖書館이 設置되었으
니 成宗14(995)年 内書省이 改稱된 秘書省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秘書省을
宮外의 藏書處로 생각해왔으나 現時點에서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考究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中國에서의 秘書省과 關聯하여, 高麗時
代에 圖書館의 活動을 行했던 秘書省의 設置, 變遷, 職官, 機能, 秘閣 및
御書院과의 關係 등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 春明實業專門大學 助教授

I. 中國의 秘書省과의 關係

1. 北宋의 秘書省

中國의 各王朝는 藏書處를 가졌으니 西漢은 天祿閣, 石渠閣, 東漢은 東觀, 蘭臺, 南北朝의 魏에서는 秘書省, 晉에서는 秘書閣, 中閣, 外閣, 東晉은 東觀, 仁壽閣, 秘書閣, 隋에서는 修文殿, 觀文殿, 嘉則殿이 있었다. 唐代에는 集賢殿書院, 昭文館, 史館의 三館에 藏書를 두었던 것이다. 이 集賢殿書院은 修書를, 昭文館은 修文館, 弘文館, 宏文館 등으로도 불려졌고 檢書를, 史館은 修史를 管掌하였다. 集賢, 昭文의 兩館은 唐代의 藏書處로 代表의 機關이었다. 그후 五代에는 唐의 三館制度를 繼承했으나 中原이 混亂하였으므로 文運이 不振하여 特記할만한活動은 없었다.

宋의 太祖도 五代의 亂離로 散失된 諸國의 圖書를 蒐集하도록 命을 내려, 藏書處를 建立하였다. 宋의 藏書處로는 崇文院, 秘書省, 秘閣, 太請樓, 六閣, 四殿, 御史臺, 舍人院 등이 있었다. 이중 崇文院, 秘書省, 秘閣은 國立圖書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唐과 五代의 亂離을 거쳐온 12,000餘卷의 藏書를 收藏하고 있던 三館은 建隆(960)初에 長慶門 東北의 廬舍 10數間에 있었는데 宋初에는 西館이라고 하였다.⁽¹⁾ 이어 太平興國(976)初에 左昇龍門 東北에 三館을 別建하고 太平興國3(978)年에 崇文院이란 名稱을 賦하자 長慶門 東北에 있던 西館의 藏書를 移藏하였다. 이때 崇文院의 東廊은 昭文書庫, 南廊은 集賢書庫, 西廊은 經史子集 四庫의 史館書庫, 都合 六庫에 正副本 80,000餘卷의 藏書가 收藏되었다.⁽²⁾ 그후 端拱2(989)年 三館書籍 중에서 萬餘卷의 眞本과 内殿에서 내온 古畫와 墓跡을 收藏하기 위해 崇文院 中堂에 書庫를 建立하니 이

(1) 脫脫. 宋史. 影印本. (서울, 坎仁文化社, 1979) 卷 164. 職官志 4. 冊 2. p.3874.
馬端臨. 文獻通考. (新興書局) 國學基本叢書. 卷 174. 經籍考 1. 冊 5. p.1508.

(2) 脱脫. 宋史. loc. cit.
馬端臨. 文獻通考. loc. cit.

것이 秘閣이었다.⁽³⁾ 秘閣이 崇文院에 建立되니 그 屬司는 三館과 합하여 四館이 된 것이다. 淳化2(991)年 5月 다시 史館에 收藏된 天文書, 曆算書, 隕陽書, 術數書, 兵法書 등 5,012卷과 天文 및 圖畫 114卷을 秘閣에 移藏하였으며,⁽⁴⁾ 眞宗時(998—1021)에는 三館에 命해 四部의 書籍을 각 2本씩 書寫하여 龍圖閣, 太清樓, 玉宸殿, 四門殿에 分置하기도 하였다.⁽⁵⁾ 大中祥符8(1015)年 館閣에 火災가 發生하여 書籍이 燒失되었고 右掖門밖에 崇文外院을 設置하고 太清樓本을 빌려 補寫하니 天聖3(1025)年에 17,600卷이 完成되었고 太清樓本은 返納되었다. 天聖9(1031)年에 새로운 崇文院이 建立되었으므로 이에 外院은 廢止되었다.⁽⁶⁾ 熙寧5(1072)年 崇文院은 秘書省에 隸屬되었고, 元豐5(1082)年 역시 王安石의 新法에 의해 官制가 改編되니 崇文院은 秘書省으로 되고 定員이 確定되었던 것이다.⁽⁷⁾ 政和5(1115)年 4月에는 秘書省이 右文殿으로 改稱되었으며 政和8(1118)年에는 新左藏庫로 移置되었다. 徽宗年間(1100—1125)에 三館書籍에 遺逸이 많아져서 書籍을 廣求하고 繕寫하여 宣和殿, 太清樓, 秘閣에 備置하였는데 宋나라가 南渡하기 까지에는 都合 6,705部 73,877部의 書籍이 收藏되었다.⁽⁸⁾

秘書省의 初期 職制로는 監(1員), 少監(1員), 丞(1員), 著作郎(1員), 著作佐郎(2員), 秘書郎(2員), 校書郎(4員), 正字(2員)가 있었으며, 吏屬으로는 句當官(2員), 孔目官(1員), 表奏官(1員), 掌舍(1員), 監書庫內侍(1員), 兼監秘閣圖籍孔目官(1員)을 두었다. 天禧初(1017)에 이르러 여기에 檢討와 校勘을 增置하였다. 元豐5(1082)年 官制를 改編하였는데 監, 少監, 丞, 著作郎, 著作佐郎 4員, 校書郎 2員, 正字 4員으로 定하였으며 그후 變更된 듯하여 政和6(1116)年에 修撰도 두었고⁽⁹⁾ 宣和2(1120)年에 다시 元豐官制에 의

(3) 脫脫. 宋史. loc. cit.

(4) 馬端臨. 文獻通考. op. cit. 卷 174. 經籍考. 冊 5. p. 1508.

(5) 脱脫. 宋史. op. cit. 卷 155. 藝文志 1. 冊 3. p. 5032.

(6) 馬端臨. 文獻通考. op. cit. 卷 174. 經籍考. 冊 5. p. 1509.

(7) 文獻通考에서는 元豐 3年으로 記錄하고 있으나 宋史 職官에서는 元豐 5年으로 記錄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宋史을 따랐다.

(8) 脱脫. 宋史. op. cit. 卷 155. 藝文志 1. 冊 3. p. 5033.

(9) 馬端臨. 文獻通考. op. cit. 卷 54. 職官考 8. 冊 2. p. 495.

해 秘書省의 定員을 定하였던 것이다.⁽¹⁰⁾

宋代 秘書省에 속했던 官員의 機能을 살펴보면 監, 少監, 丞은 古今의 經籍, 圖書, 國史, 實錄, 天文曆數를 管掌하였으며, 著作郎과 著作佐郎은 日曆修纂을 管掌하였고, 秘書郎은 集賢院, 史館, 昭文館, 秘閣의 圖籍을 管掌하여 甲乙丙丁으로 分類하였고, 校書郎과 正字는 典籍을 校讐하고 誤謬를 判正하는 業務를 擔當하였던 것이다.⁽¹¹⁾ 端拱2(989)年 崇文院 中堂에 秘閣을 建立하였을 때 秘閣에는 直秘閣, 直館, 直院을 두고 館職이라고 불렸고 他官으로 兼任하는 者는 貼職이라고 불렸던 것이다. 崇文院을 廢하고 秘書省으로 改編했을 때 監으로 부터 正字에 이르기까지는 職事官으로 하고 直館, 直院은 罷하고 直秘閣만 貼職으로 하였는데 政和6(1116)年에는 貼職修撰을 두었다.⁽¹²⁾ 元豐 5年에 崇文院을 秘書省으로 改稱했다고 하나 그 以前인 淳化元(990)年에도 秘書省이란 記錄이 나오고 있다.⁽¹³⁾ 中國 歷代로 書籍의 管掌機關에 있어 秘書監은 後漢 桓帝 延熹2(159)에 처음 설치되었고 秘書省은 梁代에 設置된 바 있다. 以後 秘書省과 秘書監이 常時 通用되어 아마 宋初에도 秘書省이란 名稱이 崇文院과 混用되다가 正名으로 되었고 이어 南渡한 후에도 繼續되지 않았을까 한다.

2. 南宋의 秘書省

靖康의 亂(1126)後 高宗은 臨安으로 遷都하고 秘書省을 國史院의 右側에 建立하였으니 때는 紹興元(1131)年이었다. 이때 官員은 監 혹은 少監(1員), 丞(1員), 著作郎(1員), 著作佐郎(1員), 校書(2員), 正字(2員)를 두었다. 이로부터 秘書省에서는 闕文을 採求하여 漏逸을 补綴하므로 四庫의 書籍이 대체로 備置되니 秘書省에서는 史館을 建立하고 神宗과 哲宗實錄을 修纂하였던 것이다. 이어 人才를 選拔하여 檢討와 校勘을 兼하게 하고 侍從官으로

(10) 脫脫. 宋史. op. cit. 卷 164. 職官志 4. 冊 2. pp. 3874—5.

(11) lot. cit.

宋史 職官에 記錄된 바에 의하면 秘書省의 屬司는 崇文院(集賢院, 史館, 昭文館), 秘閣, 日曆所, 會要所, 國史實錄院, 太史局, 算學이 있었기 때문에 月曆修纂 등도 담당했던 것임이다.

(12) 馬端臨. 文獻通考. op. cit. 卷 54. 職官考 8. 冊 2. p. 495.

(13) ibid. 卷 54. 職官考 10. 冊 2. p. 510.

修撰에 充員하였다. 同5(1135)년에는 唐代의 18學士制를 模倣하여 定員을 18員으로 하고 監, 少監, 丞 외에 著作佐郎(1員), 秘書郎(2員), 校書郎과 正字를 합쳐 12員으로 하였다. 또한 史館을 秘書省의 周圍로 옮겼으며 國史를 修纂할 때에는 國史院을 열고, 實錄을 修纂할 때는 實錄院을 열었고 매해 曝書會를 가졌다 것이다. 隆興2(1164)년에 이르러 定員을 廢止하였고, 乾道9(1173)년에는 正字의 定員을 6員으로 하였다가 淳熙2(1175)년에 監, 少監을 두고 少監, 丞을 除外한 7員을 定員으로 하였으며⁽¹⁴⁾ 紹興2(1191)년에는 監, 少監, 丞 외에 2員만 두었다. 이외에 吏屬으로는 都孔目官(1員), 副孔目官(1員), 四庫書直官(2員), 表奏官(1員), 書庫官(1員), 守當官(2員), 正名楷書(5員), 守關(7員), 正貼司(6員), 監門官(武官인 1員), 專知官(1員)을 두었었다.⁽¹⁵⁾

요컨대, 秘書省이란 魏에서 부터 設置되어 經籍에 관한 業務를 管掌해왔으며 北宋에서도 設置되었고 南宋으로 繼承된 官衙였던 것이다. 中原에 있었던 秘書省의 制度는 高麗에 많은 影響을 끼쳤었고, 高麗의 官制는 新羅의 官制를 踏襲하지 않고 오히려 中朝의 制度를 많이 採擇했음은 官名과 職名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다음 章에서 詳述하겠지만 거의 그 名稱이 使用되었던 것이다.

II. 高麗 秘書省의 變遷과 職官

高麗初에는 泰封의 禁書省을 繼承한 内書省을 設置하고 經籍과 祝疏를 管掌하게 하였다. 成宗14(995)년 官制改編으로 内書省은 秘書省으로 改稱되고 最高責任者로 秘書監을 두었으며, 文宗5(1051)년에 이르러는 秘書省의 最高責任者를 正3品 判秘書省事로 補하고 대폭 增員하였던 것이다. 이런 官制가 持續되다가 高麗가 蒙古에 服屬되자 忠烈王元(1275)년에 官制改編이

(14) 監, 少監, 丞 외에 7員으로 定員을 한 것은 文獻通考(冊2, p.510)에서는 隆興元(1163)年으로 記録하고 있다.

(15) 脫脫. 宋史. op. cit. 卷 164. 職官志 4. 冊 2. pp. 3876--7.

있었으며, ⁽¹⁶⁾ 同王24(1298)年에 이르러 王이 世子인 忠宣王에게 禅位한 期間사이에 秘書監으로 改編되어 判事는 減해지고 丞도 從 6品官으로 降等되었다. 同王34(1308)年 忠宣王이 即位하여 秘書監을 典校署로 改稱하니 藝文館의 管轄하에 두고 正5品官인 丞을 責任者로 하였다. 곧 이어 典校寺로 陞格시켜 正3品 判事를 두었다가 恭愍王5(1356)年 秘書監으로 復稱하였고 同11(1362)年 典校寺로 還元시키고 同18(1369)年에 다시 同 5年の 官制를 復用하였다가 同21(1372)年 또다시 同11年 官制로 復舊하였다 것이다. ⁽¹⁷⁾

官制의 變遷에 따라 職官에도 역시 變化가 있었다. 國初에 있었던 内書省의 職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成宗 14年 秘書省으로 改稱되고 난 후에는 監, 少監, 丞, 郎, 校書郎, 正字를 두었다고 하는데 品階는 알려져 있지 않다. 文宗5年에는 判事(正3品 1員), 監(從3品 1員), 少監(從4品 1員), 丞(從5品 2員), 郎(從6品 1員), 校書郎(正9品 2員), 正字(從9品 2員), 校勘(從9品 2員)을 두었고, 吏屬으로 主事(1員), 令史(1員), 書藝(10員), 記官(2員), 書手(15員)를 두었다. 忠烈王24(1298)年에 忠宣王이 判事를 減하고 丞을 從6品으로 郎을 從7品으로 降等시키고 文宗時에 設置했던 것으로 알려진 御書院의 留院官 2員을 校勘에 兼任시켰다. 忠烈王34年에는 丞(正5品 1員), 郎(正7品 1員), 校勘(正9品 1員), 檇知校勘(12員)을 두었다가 그후 典校寺로 改稱했을 때는 判事(正3品), 令(從3品), 副令(從4品), 丞(從5品), 郎, 注簿, 校勘, 正字를 두었다. ⁽¹⁸⁾ 恭愍王5年에는 判事(正3品), 監(從3品), 少監(從4品), 丞(從5品 2員), 著作郎(正7品 2員), 郎(從7品 2員), 秘書郎(正8品 4員), 校勘(正9品), 正字(從9品)를 두었다가 恭愍王11年 監을 다시 令으로 少監을 副令으로 改稱하고 著作郎을 革罷하였으며, 郎을 正7品으로 陞格시키고 校書郎을 革罷, 注簿(正8品)을 두고 校勘을 從9品으로 降等시키고 他官

(16) 鄭隣趾等撰. 高麗史.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2) 卷 28. 冊上. p.569. 忠烈王元年 10月壬戌.

(17) ibid. 卷 76. 百官. p. 671—2.

(18) 弘文館編. 增補文獻備考. (臨熙 2) 卷 220. 職官考 7. 張 31.

은 從前의 制度를 따랐던 것이다.⁽¹⁹⁾ 이를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1. 高麗朝 秘書省의 變遷과 그 職官

太祖	內書省	
成宗14(995)	秘書省	監, 小監, 丞, 郎, 校書郎, 正字
文宗5(1051)	秘書省	判事(正3品, 1員), 監(從3品, 1員), 小監(從4品, 1員), 丞(從5品, 2員), 郎(從6品, 1員), 校書郎(正9品, 2員), 正字(從9品, 2員), 校勘(從9品, 2員), 主事(1員), 令史(1員), 書藝(10員), 記官(2員), 書手(15員).
忠烈24(1298)	秘書監	丞(從6品), 郎(從7品), 校勘(2員, 御書留院官 2員이兼任)
忠宣即(1308)	典校署 (藝文館管轄)	丞(正5品, 1員), 郎(正7品, 1員), 校勘(正9品, 1員), 權知校勘(12員)
	典校寺	判事(正3品), 令(從3品), 副令(從4品), 丞(從5品), 郎, 注簿, 校勘, 正字,
恭愍5(1356)	秘書監	判事(正3品), 監(從3品), 少監(從4品), 丞(從5品, 2員), 著作郎(正7品, 2員), 郎(從7品, 增 2員), 秘書郎(正8品, 4員), 校勘(正9品), 正字(從9品).
恭愍11(1362)	典校寺	判事(正3品), 令(從3品), 副令(從4品), 丞(從5品, 2員), 郎(正7品), 注簿(正8品), 校勘(從9品), 正字(從9品)
恭愍18(1369)	秘書監	恭愍5年 官制와 同一
恭愍21(1372)	典校寺	恭愍11年 官制와 同一

위 表는 高麗史의 職官과 增補文獻備考의 職官을 綜合하여 作成한 것이다. 이는 果然 實際와 符合되는 가에 대하여 高麗史 列傳, 高麗人의 文集, 金石文 등의 資料를 參考하여 記錄에 나타나는 그대로 職名을 轉載하면서 判事부터 順序로 살펴보기로 한다.

判秘書省事는 中國의 秘書省官制에서는 言及되지 않았던 職名이다. 이는 中樞 内臣이兼任하고 庶務와 行政을 管轄했던 高麗朝 實文閣의 提舉, 同提舉, 管勾, 同管勾와 같은 任務를遂行하면 秘書省의 最高責任者였다. 이들은 대개 實文閣學士, 知制誥 등도兼任하며 講論에 參與하고 圖書의 編

(19) 鄭麟趾, op. cit. 卷 76. 百官. pp. 671-2.

刊, 訂校 등을 管掌하던 榮職이었던 것이다. 記錄에 나타나는 判事들을 연대순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2. 判秘書省事 · 判秘書寺事 · 判典校寺事⁽²⁰⁾

年 度	職 名	姓 名	典 據
睿元(1106) 3.	判秘書省事	金德珍	高麗史 卷 12 上 p.249
睿9(1114) 7.	判秘書省事	李 輞	高麗史 卷 13 上 p.275
睿12(1117) 6.	判秘書省事	朴景仁	高麗史 卷 14 上 p.288
仁元(1122) 4.	判秘書省事	金 緣	高麗史 卷 15 上 p.300
仁宗初	判秘書省事	金仁存	高麗史 卷 96 下 p.138
仁8(1130) 6.	判秘書省事	金富尙	高麗史 卷 16 上 p.325
仁15(1137) 3.	判秘書省事	任元數	高麗史 卷 97 下 p.158
毅即(1147)	判秘書省事	韓惟忠	高麗史 卷 16 上 p.340
毅2(1148) 3.	判秘書省事	林 光	追補 p.114
明22(1192) 4.	判秘書省事	崔 詭	高麗史 卷 17 上 p.355
黑宗年間	判秘書省事	白光臣	追補 p.128
熙宗年間	判秘書省事	崔 謙	高麗史 卷 20 上 p.416
高2(1215) 以前	判秘書省事	琴 儀	高麗史 卷 99 下 p.195
高4(1217)	判秘書省事	崔甫淳	名賢集 1 p.384
高12(1225)	判秘書省事	宋國瞻	高麗史 卷 99 下 p.194
高19(1232) 4.	判秘書省事	李奎報	名賢集 1 p.386
高宗時	判秘書省事	李淳牧	總覽 上 p.456
元3(1262) 4.	判秘書省事	朴 優	高麗史 卷 102 下 p.251
忠烈2(1276) 11.	判秘書寺事	朱 悅	高麗史 卷 102 下 p.246
忠烈王中期	判秘書寺事	尹 諧	各賢集 1 p.570
			高麗史 卷 102 下 p.250
			高麗史 卷 25 上 p.513
			高麗史 卷 28 上 p.573
			高麗史 卷 106 下 p.346

(20) 以下 表에 나오는 典據는 다음과 같다.

高麗名賢集, 1~5. (서울, 景仁文化社, 1973)

徐居正, 東文選. (서울, 慶熙出版社, 1976)

李蘭映, 高麗金石文道補.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6)

鄭麟趾等, 高麗史. 上中下.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2)

李克堪等, 高麗史要略. (서울, 東國文化社, 4293)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上下. (1919)

崔灝, 拙藁千百.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2)

年 度	職 名	姓 名	典 據
忠烈王中期	判秘書寺事	元 卿	追補 p.210
忠烈王時	判秘書寺事	金 珣	高麗史 卷 103 下 p.270
忠烈21(1295) 閏 4.	判秘書省事	崔 瑞	高麗史 卷 31 上 p.636
忠烈33(1307) 3.	判秘書寺事	朴全之	追補 p.221
忠烈王以後	判秘書 事	安 獄	高麗史 卷 32 上 p.666
忠烈34(1308) 7.	判秘書寺事	李承休	高麗史 卷 106 下 p.349
忠烈34(1308) 7.	判秘書寺事	全 昇	高麗史 卷 33 上 p.676
忠宣5(1313)	判典校寺事	崔元中	高麗史 卷 33 上 p.676
忠肅元(1314) 6.	判典校寺事	洪 淪	追補 p.219
忠肅3(1316)	判典校寺事	李齊賢	高麗史 卷 34 上 p.699
忠肅12(1325)	判典校	尹宣佐	名賢集 3 p.931
忠肅14(1327) 11.	判典校寺事	李兆年	名賢集 3 p.75
忠肅時	判典校寺事	鄭 牧	高麗史 卷 35 上 p.715
忠惠即(1330)	判典校 事	李兆年	高麗史 卷 105 下 p.320
忠憲1(1331)	判典校	安 輝	高麗史 卷 109 下 p.386
忠肅復1(1332)	判典校	尹宣佐	名賢集 3 p.73
忠惠復3(1342)	判典校	閔思平	高麗史 卷 109 下 p.385
忠惠復位時	判典校寺事	金光載	東文選 卷 125 p.515
忠穆即(1345) 6.	判典校寺事	鄭 怡	名賢集 3 p.942
恭愍1(1352)	判典校寺事	鄭云敬	高麗史 卷 37 上 p.743
恭愍4(1355)	判典校寺事	柳 淑	東文選 卷 117 p.392
恭愍12(1363) 閏 3.	判典校寺事	金演龍	名賢集 3 p.947
恭愍12(1363) 閏 3.	判典校寺事	成士達	高麗史 卷 40 上 p.799
恭愍20(1371) 7.	判典校寺事	李進修	高麗史 卷 40 上 p.799
恭愍21(1372)	判典校寺事	安景恭	高麗史 卷 43 上 p.841
恭愍王時	判典校寺事	朱 懿	東文選 卷 129 p.565
恭愍王時	判典校寺事	李茂方	名賢集 3 p.931
恭愍王時	判典校 事	林 樸	高麗史 卷 112 下 p.459
恭愍王時	判典校寺事	康好文	高麗史 卷 111 下 p.442
禡1(1375)	判典校寺事	朴尚衷	高麗史 卷 121 下 p.654
禡3(1377)	判典校寺事	趙云乞	高麗史 卷 112 下 p.460
禡3(1377) 2.	判典校寺事	李 悅	高麗史 卷 112 下 p.466
禡7(1381)	判典校寺事	河 崇	節要 卷 30 p.689
禡8(1382)	判典校寺事	閔 霽	東文選 卷 129 p.562

年 度	職 名	姓 名	典 據
禡8(1382)	判典校寺事	金九容	高麗史 卷 104 下 p.293
禡9(1383)	判典校寺事	權 鑄	總覽 上 p.509
禡10(1384) 1.	判典校寺事	金九容	節要 卷 32 p.723
禡11(1385)	判典校寺事	權 鑄	總覽 上 pp.519, 525
禡王末年	判典校寺事	權 近	高麗史 卷 107 下 p.362
恭謾元(1389) 12.	判典校寺事	南 在	高麗史 卷 45 上 p.871
恭謾2(1390) 4.	判典校寺事	南 在	高麗史 卷 45 上 p.879
恭謾2-3年[사이]	判典校寺事	金子粹	高麗史 卷 120 下 p.634
恭謾4(1392) 4.	判典校寺事	吳思忠	高麗史 卷 46 上 p.906

文宗5年부터 判事を 두었다고 하나睿宗 以前의 記錄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睿宗 以後부터 記錄이 간혹 나타났으며 忠烈王24年부터 判事が廢止된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如前所述 있었던 것이다. 또한 忠烈王 24年に 秘書監으로 改稱되었다고 하였으나 忠烈王2年부터 判秘書寺事로 記錄된 것으로 보아 忠烈王初에 秘書寺로 改稱된 듯하다. 다만 忠烈王21년의 崔瑞의 記錄에만 秘書省으로 記錄되어 疑訝心을 가지게 될 뿐이다. 또한 忠烈王末까지의 記錄에도 모두 秘書寺인 것이다. 忠烈王34年 8月 忠宣王이 登極하여 秘書監을 藝文館 管轄下의 典校署로 降等시켰고 이어 典校寺로 陞格改編시켰는데 언제 改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表 1을 보면 忠宣王5年 崔元中이 判典校寺事로 在職했음을 미루어 늦어도 忠宣王5年 以前임을 알 수 있다. 恭愍王18年에 典校寺가 秘書監으로 改稱되고 同21년까지 維持했다고 하나 同20年 7月 己卯에 羅州牧使였던 李進修가 判典校寺事로 任命되었으나 이도 또한 疑訝한 일이다. 判秘書省事의 경우 이와같은 몇 가지의 問題가 있다.

다음은 3品官이 任命되는 秘書監을 살펴보기로 한다. 秘書監은 後漢桓帝延熹2(159)年에 1員을 두고 圖書를 管掌하고 古今文字를 考究하도록 하였고, 魏의 文帝, 晉의 惠帝時에도 두었었다. 隋에서는 煩帝後에 令으로 改稱한 바 있으며, 唐의 武德時에 監으로 復舊시켰다가 龍朔2(662)年에 蘭臺로 改稱된 후 太史로 改稱되었으며 成亨初에 監으로 復舊된 바 있는 官職이

다.⁽²¹⁾ 宋에서도 初부터 監을 두었다. 이에 高麗의 秘書監에 관한 記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3. 秘書監·典校令

年 度	職 名	姓 名	典 據
穆7(1004) 前	秘 書 監	柳邦憲	總覽 上 p.266
顯2(1011)	秘 書 監	蔡忠順	高麗史 卷 4 上 p.89
顯13(1022)	秘 書 監	劉 徵	高麗史 卷 4 上 p.104
顯17(1026)	秘 書 監	姜民瞻	總覽 上 p.261
文3(1049) 3	秘 書 監	鄭 傑	高麗史 卷 7 上 p.148 總覽 上 p.276
文27(1073) 6	秘 書 監	李成美	高麗史 卷 9 上 p.185
文29(1075) 7	秘 書 監	洪德成	高麗史 卷 9 上 p.187
宣4(1087) 1	秘 書 監	林昌榮	高麗史 卷 10 上 p.205
肅9(1104) 7	秘 書 監	崔弘嗣	高麗史 卷 12 上 p.243
肅10(1105) 閏1	秘 書 監	李 肇	高麗史 卷 12 上 p.244
肅10(1105) 6	秘 書 監	金景庸	高麗史 卷 12 上 p.245
肅10(1105) 11	秘 書 監	高 令	高麗史 卷 12 上 p.246
睿6(1111) 3	秘 書 監	金 緣	高麗史 卷 13 上 p.268
睿8(1113)	秘 書 監	李公壽	追補 p.101
睿8(1113) 後	秘 書 監	金仁存	高麗史 卷 96 下 p.138
睿10(1115)	秘 書 監	周 仔	高麗史 卷 94 下 p.111
仁12(1134)	秘 書 監	鄭 沈	追補 p.99
仁18(1140)	秘 書 監	金永錫	總覽 上 p.392
仁18(1140)	秘 書 監	崔 桦	追補 p.126
仁22(1144) 12	秘 書 監	郭東珣	高麗史 卷 17 上 p.349
毅3(1149) 4	秘 書 監	庾 翊	高麗史 卷 17 上 p.357
毅10(1156) 前	秘 書 監	張鴻羽	追補 p.269
毅宗以後	秘 書 監	崔陟卿	高麗史 卷 99 下 p.205
毅宗明宗年間	秘 書 監	金光中	高麗史 卷 101 下 p.234
康2(1213) 4	秘 書 監	李淳中	高麗史 卷 21 上 p.436
高宗初	秘 書 監	李仁老	高麗史 卷 102 下 p.249 破闢集 卷上 p.1
高14(1227) 12	秘 書 監	白敦賛	高麗史 卷 22 上 p.456
高15(1228) 12	秘 書 監	崔林壽	高麗史 卷 22 上 p.455

(21) 馬端臨. 文獻通考. op. cit. 卷 56. 職官 10. 冊 2. p.510.

年 度	職 名	姓 名	典 據
高35(1248) 2	秘書監	桓公叔	高麗史 卷 23 上 p.476
元8(1267) 7	秘書監	郭如	高麗史 卷 26 上 p.523
忠烈16(1290) 後	秘書監	閔徵	追補 p.214
忠烈24(1298)	秘書監	權溥	追補 p.231
忠烈24(1298) 5	秘書監	李承休	高麗史 卷 33 上 p.675
忠宣1(1308) 7	秘書尹	李瑊	高麗史 卷 33 上 p.676
忠宣王時	典校令	白元恒	高麗史 卷 34 上 p.699
忠肅王時	典校令	安牧	拙藁千百 p.57
忠惠5(1345)	秘書監	全忠	高麗史 卷 37 上 p.743
恭愍元(1352)	典校令	申德隣	高麗史 卷 38 上 p.757
恭愍6(1357)	秘書監	鄭云敬	東文選 卷 117 p.392
恭愍10(1361)	典校令	韓脩	名賢集 3 p.928
恭愍16(1367)	典校令	林樸	高麗史 卷 41 上 p.819
恭愍20(1371)	秘書監	朴停之	名賢集 4 p.572
恭愍21(1372) 4	秘書監	劉景元	高麗史 卷 43 上 p.846
禡1(1375)	典校令	朴尚衷	節要 卷 30 p.678
禡5(1379)	典校令	河峴	東文選 129 p.562
禡王時	典校令	鄭習仁	高麗史 卷 112 下 p.460
恭讓3(1391) 9	典校令	禹洪得	高麗史 卷 46 上 p.899

秘書監에 관한記錄은 表1과一致되고 있다. 秘書監에 該當되는 職名은 典校寺에서는 典校令이었다. 表1에서는 忠烈王24年以後 忠烈王34年까지에는 秘書監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表3에서는 그期間 중에도 秘書監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恭愍王21年 4月 王은 秘書監 劉景元을 宿旨別監兼揀選御馬使借로 삼아 耽羅로 派遣했으나 韓脩牧子 등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한記錄은 表1과一致되지 않는다. 이때는 秘書監이 아니고 典校令이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恭愍王10年 韓脩도 秘書監이어야 하는데 典校令으로記錄되어 있다.

秘書少監은 秘書監의 下에 從 4品官이 주로任命되었으며 典校寺로 改稱되었을 때는 典校副令으로 바뀌어졌던 것이다. 中國에서도 少監이 設置된 것은隋代煬帝가 1員을 둔데서 비롯되어 唐의 龍朔2年 秘書省이 蘭臺로改

稱되었을 때는 侍郎으로 불렸다가 太極元(712)年에는 2員이 되고 다시 少監으로 불리졌다.⁽²²⁾ 宋나라에서도 少監 1員을 둔 바 있다. 다음은 高麗朝의 秘書少監과 典校副令을 찾아낸 것이나 高宗 및 忠烈王時의 記錄에 少卿과 少尹으로 나타난 것은 秘書少監으로 斷定을 내면 根據는 없지만 同一할 것으로 推定하여 收錄하였다.

表 4. 秘書少監·典校副令

年 度	職 名	姓 名	典 據
顯22(1031)	秘書少監	林有仁	高麗史 卷 5 上 p.116
靖8(1042)	秘書少監	李令幹	高麗史 卷 6 上 p.135
文24(1070)	秘書少監	高 維	高麗史 卷 8 上 p.179
文25(1071)	秘書少監	殷 昊	高麗史 卷 8 上 p.180
肅6(1101)	秘書少監	朴 浩	總覽 上 p.293
睿宗仁宗年間	秘書少監	金 誠	總覽 上 p.357
睿宗1(1106)	秘書少監	李公壽	追補 p.101
符6(1111)以前	秘書少監	金 鎮	高麗史 卷 98 下 p.187
符8(1113)	秘書少監	韓 冲	高麗史 卷 13 上 p.273
符10(1115) 以前	秘書少監	任 菩	追補 p.90
仁5(1127)	秘書少監	鄭 治	追補 p.99
仁15(1137)	秘書少監	金永錫	總覽 上 p.392
仁18(1140)	秘書少監	文公裕	追補 p.150
仁20(1142)	秘書少監	金 精	高麗史 卷 17 上 p.346
仁22(1144)	秘書少監	崔哀抗	追補 p.113
毅16(1162) 以前	秘書少監	金 蘭	總覽 上 p.389
明6(1176)	秘書少監	庚世績	高麗史 卷 19 上 p.397
明10(1180)	秘書少監	王 度	高麗史 卷 20 上 p.404
高7~9年사이	秘書少監	李公老	高麗史 卷 102 下 p.249
高30(1243)	秘書少監	金之岱	高麗史 卷 23 上 p.474
高41(1254)	秘書少卿	李守孫	高麗史 卷 24 上 p.485
忠烈24(1298) 以後	秘書少尹	閔 頤	拙藁千百 p.95
忠肅5(1336)	典校副令	閔思平	高麗史 卷 108 下 p.370
忠惠復3(1342)	典校副令	全元發	東文選 卷 125 p.515
忠惠復4(1343)	典校副令	李公遂	總覽 上 p.487 名賢集 3 p.950

(22) 馬端臨, loc. cit.

年 度	職 名	姓 名	典 據
忠穆以前	典校副令	李公壽	高麗史 卷 112 下 p.445
忠穆3(1347)	典校副令	鄭云敬	東文選 卷 117 p.392
恭愍5(1356)	秘書少監	韓 倘	名賢集 3 p.928
恭愍13(1364)	典校副令	李勣報	高麗史 卷 40 上 p.809
恭愍16(1367)	典校副令	金濟顏	高麗史 卷 104 下 p.294
恭愍時	典校副令	閔 鑑	高麗史 卷 108 下 p.371
恭愍王以後	典校副令	成石麟	高麗史 卷 117 下 p.585
禡2(1376)	典校副令	河 嵩	東文選 卷 129 p.562
禡2(1376) 7	典校副令	申仁甫	節要 卷 30 p.684
禡5(1379) 頃	典校副令	鄭 洪	名賢集 3 p.960
禡王時	典校副令	權 近	高麗史 卷 107 下 p.362
禡王時	典校副令	金子粹	高麗史 卷 120 下 p.634

表3에서도 忠烈王24年과 34년 사이에 秘書監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던 바와 같이 表4에서도 역시 이期間에 秘書少監이 있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秘書監의 丞도 成宗14年 부터 設置되어 麗末까지 持續된 官職이었다. 中國에서는 魏 武帝時에 丞 2員을 두고 尚書奏事를 管掌하게 한데서 비롯되어 晉代에도 繼承되고 唐 龍朔2(662)年 蘭臺大夫로 改編되었다가 咸亨(670)初에 復舊되었고⁽²³⁾ 宋初에도 설치되었던 것이다. 高麗에서는 正5品 내지 從6品官이 任命되었기 때문에 高位職에 비해 記錄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表 5. 秘書丞·典校丞

年 度	職 名	姓 名	典 據
睿宗仁宗年間	秘書丞	金 誠	追補 p.357
毅宗年間	秘書丞	王 冲	追補 p.151
明5(1175)	秘書丞	朴 紹	高麗史 卷 19 上 p.398
明8(1178)	秘書丞	尹宗賜	高麗史 卷 19 上 p.400
忠烈4(1278)	秘書丞	崔 瑞	追補 p.214
忠烈32(1306)	秘書丞	李兆年	名賢集 2 p.302
忠宣3(1311)	典校寺丞	李齊賢	總覽 上 p.483 名賢集 3 p.931

(23) 馬端臨. loc. cit.

年 度	職 名	姓 名	典 據
忠定2(1350)	秘書監丞	李毅	東文選 卷 116 p.387
恭愍元(1352)	典校丞	安吉祥	高麗史 卷 38 上 p.757
恭愍12(1363)	典校寺丞	金文鉉	高麗史 卷 40 上 p.799
恭愍15—20年사이	秘書監丞	金湊	高麗史 卷 114 下 p.520
恭愍23(1374)	典校寺丞	李仁復	名賢集 3 p.921

그러나 表5로 보아서는 忠宣王3(1311)年에 李齊賢이 典校寺丞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典校署에서 典校寺로 改編되었던 것은 忠宣王3年 以前으로 즐 험할 수 있다. 忠定王2年 李毅이 秘書監丞으로 있었다는 것은 高麗史職官과는一致되지 않는다. 또한 恭愍王時 金湊가 秘書監丞을 지냈는데 대체로 同 18年~20年 사이로 즐 험할 수 있을 것 같다.

秘書丞 다음은 秘書郎이었다. 秘書郎은 後漢時 設置되어 馬融이 秘書郎이 되어 東觀에 나아가 校書를 擔當한 바 있었으며, 魏의 武帝도 秘書郎을 두었고, 晉의 武帝도 秘書圖籍을 甲乙丙丁 四部로 分類하여 秘書郎中 4員을 두고 각各一部를 管掌하게 하였던 것이다. 宋과 齊나라에서도 秘書郎 4員을 두었고 北齊에서는 秘書郎을 두었으며 隋와 唐에서도 秘書郎 4員을 두었으며 唐開元28(740)年에는 3員으로 減해졌고⁽²⁴⁾ 宋에서는 2員으로 더욱 減해졌다. 高麗朝에서도 秘書郎을 두어 時期에 따라 1員以上 4員까지 두 것으로 記錄되었으나 發見된 것은 극히 적다.

表 6. 秘 書 郎

年 度	職 名	姓 名	典 據
肅6(1101)	秘書郎	高世備	總覽 上 p.294
高3(1216) 以後	秘書郎	薛愼	追補 p.206
高7—11年사이	秘書郎	李世華	東文選 卷 122 p.480 名賢集 1 p.566
高45(1258) 秋	秘書郎	元傅	追補 p.210
元宗初	秘書郎	許琰	總覽 上 p.464
忠烈11(1285) 以後	秘書郎	閔頓	拙藁千百 p.94

(24) 馬端臨. loc. cit.

年 度	職 名	姓 名	典 據
忠烈14(1288)	秘書郎	尹宣佐	名賢集 3 p.75 高麗史 卷 109 下 p.385
忠烈20(1294)	秘書郎	李兆年	高麗史 卷 109 下 p.386
忠烈28(1302)	秘書郎	全柏軒	東文選 卷 123 p.490
忠烈王時	秘書郎	崔碩	高麗史 卷 121 下 p.644
忠肅16(1329) 頃	秘書郎	金承用	追補 p.222
恭愍3(1354) 前	秘書郎	洪壽山	名賢集 3 p.961
恭愍7(1358)	秘書郎	揭法	總覽 上 p.495

위의 表6에서는 別問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음 秘書校書郎은 成宗 14년부터 忠烈王24년까지 存續된 것이다. 漢代에는 蘭臺와 東觀에서 書記하였으므로 校書를 하는 職分은 있었으나 官員은 따로 두지 않았고 그 職分을 행하는 사람이 郎中이면 校書郎中, 郎이면 校書郎으로 稱하였다. 魏에서 처음 校書郎을 두기 시작하였으며, 北齊에도 두었고 隋에서는 校書郎 12員을 두었으나 梁帝初에 2員을 減했다가 末年에는 40員으로 增員하였고 唐에서는 8員을 두었다.⁽²⁵⁾ 宋初에는 校書郎 4員을 두었다가 南渡後에는 2員을 두었었고 그후 定員調整��에는 定額이 없었다. 記錄에 나타난 高麗朝의 校書郎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7. 秘書校書郎

年 度	職 名	姓 名	典 據
文6(1052) 6.	秘書校書郎	張廷(宋人)	高麗史 卷 7 上 p.152
文14(1060)	秘書校書郎	盧寅(宋人)	高麗史 卷 8 上 p.169
文15(1061)	秘書校書郎	陳渭(宋人)	高麗史 卷 8 上 p.169
文24(1070)	秘書校書郎	任 蔡	追補 p.90
文31(1077) 以前	秘書校書郎	李 資 仁	總覽 上 p.281
文宗時	秘書校書郎	李 仁 成	追補 p.209
宣7(1090)	秘書校書郎	尹 諱	總覽 上 p.370
肅宗時	秘書校書郎	金 誠	總覽 上 p.356
容11(1116)	秘書校書郎	鄭 良 穩	高麗史 卷 14 上 p.280

(25) 馬端臨. 文獻通考. op. cit. 卷 56. 職官 10. 冊 2. p.511.

年 度	職 名	姓 名	典 據
睿15(1120)	秘書校書郎	張 鴻 羽	追補 p.269
毅元(1147) 以前	秘書校書郎	韓 文 俊	追補 p.114
毅6(1152) 以前	秘書校書郎	金 君 實	總覽 上 p.366
高11(1126)	權知秘書校書郎	李 白 賢	高麗史 卷 22 上 p.450
高36(1249)	秘書校書郎	沈 秀 之	高麗史 卷 23 上 p.476
高46(1259)	秘書校書郎	景 瑞 瑜	高麗史 卷 24 上 p.498
高宗以後	秘書校書郎	李 漸 湊	高麗史 卷 106 下 p.335
高宗以後	秘書校書郎	李 藏 用	高麗史 卷 102 下 p.256
忠烈11(1285) 以後	權知秘書校書郎	閔 頤 頤	拙藁千百 p.94
忠烈24(1298) 2	秘書校書郎	趙 普 成	高麗史 卷 33 下 p.673

表7에서 忠烈王25年 以後에는 校書郎에 관한 記錄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보아 正史의 記錄과 符合되고 있다. 中國의 秘書省에서는 校勘은 두지 않았고 다만 諸學士院에서는 校勘, 檢討를 두 것으로 나타났다. 高麗에서도 역시 實文閣 등에서 校勘을 두었었고, 秘書省에서는 成宗時에는 두지 않았으나 文宗5年부터 9品官 2員을 두게 되었고 후에는 1員을 두 때도 있었고 臨時職인 權知校勘을 12員까지 두 적도 있었다. 이를 記錄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다.

表 8. 秘書校勘 · 典校寺校勘 · 秘書省校勘

年 度	職 名	姓 名	典 據
文11(1057)	秘書省校勘	慶鼎相	高麗史 卷 8 上 p.164
宣7(1090)	秘書 校勘	崔 濬	高麗史 卷 98 下 p.190
仁8(1130)	秘書省校勘	金永夫	追補 p.162
高43(1256)	秘書 校勘	崔 瑞	追補 p.214
元宗末	秘書 校勘	鄭 瑙	高麗史 卷 106 下 p.341
忠肅3(1316)	權知典校校勘	朴元桂	名賢集 3 p.957
忠肅7—17年사이	秘書省校勘	李 岳	名賢集 3 p.940
忠肅9(1322) 頃	典校 校勘	安 輔	名賢集 3 p.956
忠肅14(1327) 頃	典校寺校勘	金 銖	東文選 卷 123 p.493
忠肅16(1329)	典校 校勘	李仁復	名賢集 3 p.919
忠肅後1(1332)	典校 校勘	鄭云敬	東文選 卷 117 p.392

年 度	職 名	姓 名	典 據
忠惠復2(1341)	權知典校校勘	鄭思道	名賢集 3 p.960
忠惠復來	典校 校勘	河允源	高麗史 卷 112 下 p.460
忠惠王以後	典校 校勘	田祿生	高麗史 卷 112 下 p.452
忠穆王時	典校 校勘	李茂方	高麗史 卷 112 下 p.459
忠定即(1348)	典校寺校勘	朴 緑	名賢集 3 p.957
恭愍王時	校書 校勘	許 錦	高麗史 卷 105 下 p.315

表8에 나타난 忠肅王時의 李函은 秘書省校勘을 지냈는데 職官表上으로 보아 秘書省校勘이 아니고 典校校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推定한 年代이므로 錯誤라고 斷定을 내릴 수는 없다. 또한 恭愍王時의 許錦이 校書校勘을 지냈다고 記錄되어 있는데 校書館은 朝鮮朝의 官名인 것이니 어찌 校書校勘이 되겠는가? 이때는 高麗末 鮮初의 人物들이므로 이는 朝鮮朝에 쓰여진 글이어서 鮮初의 狀況에서 朝鮮朝의 官廳名이 쓰여진 것이 아닐까 한다. 橫知典校校勘은 忠宣王이 �即位하여 典校署를 두었을 때 正5品丞 밑에 12員을 두었었는데 典校寺로 된 以後의 忠肅王과 忠惠王復位時의 記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臨時職校勘은 적어도 忠宣王即位年 부터 恭愍王5年 6月까지는 存續되었을 것으로 推定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正字, 注釋, 著作郎이 있었으나 下位官이어서 그런지 記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表1에서 부터 表8까지를 綜合하면 다음 11가지의 問題點이 擾頭된다. 즉

- ① 忠烈王24年 秘書監으로 改編된 以後에도 刑事는 여전히 두었었다는 점.
- ② 忠烈王24年이 아닌 그보다 훨씬 이전인 忠烈王2年경부터 秘書省에서 秘書寺로 改稱되었다는 점.
- ③ 典校署에서 典校寺로 陞格改編은 놓어도 忠宣王5年 以前이란 점.
- ④ 恭愍王20年 7月에는 刑秘書監事가 아니고 刑典校寺事로任命되었다는 점.
- ⑤ 忠烈王24-34년 까지에도 刑事 아래에 監이 있었다는 점.
- ⑥ 忠烈王21年 4月 劉景元이 典校令이어야 하는데 秘書監이었다는 점.
- ⑦ 恭愍王10年 韓脩는 秘書監이어야 하는데 典校令으로 記錄되었다는 점.
- ⑧ 忠烈王24-34년까지에 秘書監도 있었다는 점.
- ⑨ 忠宣王3年 李齊賢이 典校寺丞이었던 점으로 보아 典校署에서 典校寺로의 改編

은 忠宣王3年 이전이었다는 점.

⑩ 忠定王2年에 李毅이 秘書監丞이 것으로 보아 이때 秘書監이었느냐는 점.

⑪ 檄知校勘은 典校署에서만 있었던 官員이 아니고 恭愍王5年 以前의 典校寺(전교시)에서도 있었다는 점.

으로 要약할 수 있다. 이를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高麗史 世家를 통해 官制를 改定한 事實을 살펴보기로 한다.

太祖元(918) 6. 戊辰 新羅官制를 仍用하다. ⁽²⁶⁾

太祖2(919) 1. 三省六尚書官九寺의 官制를 制定하다. ⁽²⁷⁾

成宗元(982) 3. 庚戌 百官의 官號를 고치다. ⁽²⁸⁾

成宗14(995) 5. 戊午 王이 下敎하여 「唐虞의 制와 周漢의 儀는 모두 百辟의 名을 다스며 1人の 度를 永奉한 것이다. 지금 모든 官司事는 비록 禮典을 지키 禮遵하나, 額名을 차운 權稱하는 것 이 있으나, 典常을 상고하여 그 可否를 가려 假號는 모두 除去하고 通規를 表하게 하라」고 함. ⁽²⁹⁾

忠烈元(1275) 10. 壬戌 官制를 改定하다. ⁽³⁰⁾

忠烈24(1298) 6. 丁巳 元나라에서 新定한 官制를 没收하다. ⁽³¹⁾

※ 이는 忠宣王이 잠시 執權하면서 制定한 것이다.

忠宣王은 官制를 고쳤으며 아울러 人事移動이 있어서 全昇, 李承休가 判秘書寺事로任命되다. ⁽³²⁾

忠烈24(1298) 7. 戊戌 官制를 復舊하다. ⁽³³⁾

忠烈27(1301) 5. 丙午 省의 内外官을 통하여 그 官名이 上國(元)과 같은 것이 있으면 이를 모두 고치게 하였다. ⁽³⁴⁾

忠烈34(1308) 5. 丙戌 李混 등이 蕩陽王(忠宣王)이 定한 官制와 批判을 가지고 元에서 오다. ⁽³⁵⁾

忠烈34(1308) 6. 辛丑 蕩陽王이 定한 官制를 頒布하다. ⁽³⁶⁾

恭愍王5(1356) 7. 丁亥 官制를 改定하다. ⁽³⁷⁾

(26) 鄭麟趾, 高麗史, op. cit. 卷 1. 册上. p.39.

(27) ibid. 卷 1. 册上. p. 41.

(28) ibid. 卷 3. 册上. p. 66.

(29) ibid. 卷 3. 册上. p. 79.

(30) ibid. 卷 28. 册上. p. 569.

(31) ibid. 卷 33. 册上. p. 676.

(32) ibid. 卷 33. 册上. p. 676.

(33) ibid. 卷 31. 册上. p. 645.

(34) ibid. 卷 32. 册上. p. 654.

(35) ibid. 卷 32. 册上. p. 668.

(36) ibid. 卷 32. 册上. p. 668.

(37) ibid. 卷 39. 册上. p. 772.

恭愍王11(1362) 3. 甲子 官制를 改定하다.⁽³⁸⁾

恭愍王18(1369) 6. 己巳 官制를 改定하다.⁽³⁹⁾

恭愍21(1372) 6. 乙酉 官制를 改定하다.⁽⁴⁰⁾

적어도 15차에 걸쳐서 官制가 改定되었음을 알겠다. 이는 改編의 必要에 의 했을 수도 있겠고 中原의 狀況變化에 따른 것도 있겠다. 이에 따라 18, 19面의 ①, ⑤, ⑧, ⑪의 問題는 實際의 證據가 되므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이며, ②의 問題는 忠烈王元年 10月에 官制改定이 있었다는 記錄과 忠烈王16(1290)年 11月에 國史, 寶文閣, 秘書寺의 文籍을 江華로 옮겼다는 高麗史의 記錄⁽⁴¹⁾에 의해서 忠烈王元年에 秘書寺로 改編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과 ⑨는 같은 問題로서 忠宣王3年 이전으로 斷定지울 수 밖에 없다.

④ ⑦ ⑩은 年代推定에 問題가 있었을 수 있으므로 더 考究할 必要가 있으며 ⑥은 同年 6月 乙酉에 典校寺로 改編되었으니 4月에 劉景元이 秘書監이었음을 틀림없다. 이에 表1을 補完하여 秘書省의 職官을 다시 作成하면 다음과 같이 再調整할 수 있겠다.

表 9. 高麗朝 秘書省의 職官

太祖2.1.

內書省

成宗14(995) 5. 戊午

秘書省 監, 小監, 丞, 郎, 校書郎, 正字.

文宗5(1051)

秘書省 判事(正3品, 1員), 監(從3品, 1員), 小監(從4品, 1員), 丞(從5品, 2員), 郎(從6品, 1員), 校書郎(正9品, 2員), 正字(從9品, 2員), 校勘(從9品, 2員), 主事(1員), 令史(1員), 書藝(10員), 記官(2員), 書手(15員).

忠烈元(1275) 10. 壬戌

秘書寺

忠烈24(1298) 12. 庚辰

秘書監

判事, 監, 少監, 丞(從6品), 郎(從7品), 校勘(2員, 御書留院官이 兼任)
以下도 吏屬이 있었을 것임.

忠宣即(1308) 6. 辛丑

典校署

(藝文館管轄)

丞(正5品, 1員), 郎(正7品, 1員), 校勘(正9品, 1員), 權知校勘(12員)

(38) ibid. 卷 40. 册上. p. 792.

(39) ibid. 卷 41. 册上. p. 824.

(40) ibid. 卷 43. 册上. p. 847.

(41) ibid. 卷 30. 册上. p. 624.

忠宣王3(1311)年以前	典校寺	判事(正3品), 令(從3品), 副令(從4品), 丞(從5品), 郎, 注簿, 校勘, 正字, 權知校勘
恭愍5(1356) 7. 丁亥	秘書監	判事(正3品), 監(從3品), 少監(從4品), 丞(從5品, 2員), 著作郎(正7品, 2員), 郎(從7品, 增2員), 秘書郎(正8品, 4員), 校勘(正9品), 正字(從9品)
恭愍11(1362) 3. 甲子	典校寺	判事(正3品), 令(從3品), 副令(從4品), 丞(從5品, 2員), 郎(從7品), 注簿(正8品), 校勘(從9品), 正字(從9品).
恭愍18(1369) 6. 己巳	秘書監	恭愍 5年 官制와 同一.
恭愍21(1372) 6. 乙酉	典校寺	恭愍 11年 官制와 同一.

III. 秘書省의 機能 및 秘閣과 御院書과의 關係

秘書省은 名稱과 職官에 있어서 여러번 變更이 있었지만 그 機能은 麗初나 麗末이나 同一한 것이었다. 그 機能에 대하여 高麗史나 增補文獻備考에서 共히 常經籍祝疏라고만 記錄하고 있으므로 그 構體의in 것을 알기 위해 高麗史를 더 살펴 볼 必要가 있다.

秘書省의 가장 重要的業務는 斋醮祭享의 文書를 管掌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每月 一名씩 輪番迭宿하여 沐浴齋素하고 있다가 月末에 退闕하는 豹直을 했었다. 즉 高宗41(1254)年에 樞密院 副使 崔溫이 奏하여 翰林院, 實文閣, 同文院, 御書院의 官員도 秘書省에서 豹直하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穢惡를 꺽게 되므로 이들의 豹直을 禁하는 것을 請하자 王은 制可한 것⁽⁴²⁾으로 보아 斋醮祭享의 文書管掌으로 豹直하는 것은 秘書省만의 機能이었다.

또한 資料의 蒐集으로 國內의 寄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國外로 부터도 資料를 購入하고 寄贈도 받았다. 忠肅王元(1314)年 6月에 判典校寺事 洪淪

(42) ibid. 卷 24. 冊上. p.486. 高宗 41年 9月 丙寅.

은 太子府參軍으로 南京에 있다가 柳衍에게 實鈔 150錠을 주어 經籍 10,800 卷을 購得하게 하였으며⁽⁴³⁾ 同 7月에는 洪淵이 元帝에게 上奏하여 宋의 秘閣에서 收藏하였던 바 書籍 17,000卷 4371冊을 賜⁽⁴⁴⁾하게도 하였다. 國內의 으로는 文宗10(1056)年 8月 西京留守가 京內의 進士明經 등 諸業舉人이 봐야하는 書籍이 모두 傳寫字이어서 잘못됨이 많아 秘閣收藏의 九經, 漢書 등 諸書를 分賜하여 諸學院에 備置하도록 請하자 王은 有司에게 印本 각1部씩 보내주도록 命⁽⁴⁵⁾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諸機關과 諸臣에게 頒賜도 하였던 것이다.

秘書省에서는 書籍을 編해서 刊行하기도 하였고 또한 校讐도 하였다. 靖宗11(1045)年 4月 秘書省에서 禮記正義, 毛詩正義를 新刊하여 進上하자 御書閣과 文臣에게 頒賜하기도 하였고,⁽⁴⁶⁾ 肅宗6(1101)年에서 翰林院이 御名과 同韻字를 秘書省에 命해 雕板하여 頒示하므로 百姓들이 避諱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할 것을 請하자 王은 制可하였던 것이다.⁽⁴⁷⁾ 明宗22(1192)年에도 吏部尚書 鄭國儉, 判秘書省事 崔詵에게 命하여 書筵諸儒를 實文閣에 모으고 增續資治通鑑을 雙校한 후 州縣에 分送하여 雕印하도록 하였던 것이다.⁽⁴⁸⁾

秘書省 藏書에 관한記事는 高麗史 여러 군에서 發見되고 있다. 文宗12(1058)年 忠州牧에서 新雕한 黃帝 81難經 등을 秘閣에 詔置한 일,⁽⁴⁹⁾ 文宗13(1059)年 2月 安西都護府使 異善貞, 知京山府事 李成美가 新雕한 書籍을 秘閣에 備置한 일,⁽⁵⁰⁾ 文宗13(1059)年 4月 知南原府事 李靖恭이 進上한 書籍⁽⁵¹⁾ 肅宗元(1096)年 文德殿의 歷代秘藏文書 중 部秩完全한 것을 頒賜하여

(43) ibid. 卷 34. 册上. p.699. 忠肅王 元年 6月 庚寅.

(44) loc. cit. 忠肅王 元年 7月 甲寅.

(45) ibid. 卷 7. 册上. p.159. 文宗 10年 8月 戊辰.

(46) ibid. 卷 6. 册上. p.138. 靖宗 11年 4月 己酉.

(47) ibid. 卷 11. 册上. p.233. 肅宗 6年 4月 甲辰.

(48) ibid. 卷 20. 册上. p.416. 明宗 22年 4月 壬子.

(49) ibid. 卷 8. 册上. p.167. 文宗 12年 9月 己巳.

(50) loc. cit. 文宗 13年 2月 甲戌.

(51) ibid. 卷 8. 册上. p.168. 文宗 13年 4月 庚辰.

文德殿, 長齡殿, 御書房, 秘書閣에 分賜, ⁽⁵²⁾ 睿宗元(1106)年에 儒臣이 陰陽地理의 諸家書를 刪定하자 海東秘錄이라 賜名하고 正本은 御府에 收藏시켰던 것이다. ⁽⁵³⁾

秘書省 官員의 任務 중에 또 다른 業務는 侍講과 知製教였다. 旱忠惠王 5(1344)年에 새로 登極한 忠穆王은 書筵을 設置하고 右政丞 蔡河中 등과 判典校寺事 鄭怡, 典校寺丞 全忠 등으로 更日侍讀하게 하였으며, ⁽⁵⁴⁾ 忠肅王元(1314)年에 上王의 司憲執義 尹宣佐나 前典校令 白元恒에게 命해 王에게 通鑑을 侍講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⁵⁵⁾ 또한 知製教를 兼任하는 官員도 많이 있었으니 몇 가지 예를 들면,

翰林學士樞密院知奏事中大夫秘書監知制誥臣金□□⁽⁵⁶⁾

判典校寺事知制教判書禮義安景恭⁽⁵⁷⁾

典校副令知制教河端⁽⁵⁸⁾

行樞密院事奉善大夫典校副令知制教兼春秋館編修官金齊顏⁽⁵⁹⁾

左諫議大夫秘書監寶文閣學士知制誥李仁老⁽⁶⁰⁾

등이 있어 知製教를 兼行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여러 경우를 보아 秘書省에서 遂行한 業務는 齋醮祭享의 文書를 管掌하여 分番入直, 書籍의 購入, 交換, 編書, 校書, 刊書, 藏書, 侍講, 製誥 등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朝鮮朝의 集賢殿이나 垂露閣과 그軌를 같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靖宗11年 記錄인 御書閣에 收藏시켰다고 하는 記錄과 文宗 10, 12, 13, 17年과 肅宗元年的 秘閣, 秘書閣과 御書房이다. 우선 먼저 御書閣과 御書房을 살펴보기로 한다.

御書閣, 御書房은 둘 다 高麗史 職官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典校寺

(52) ibid. 卷 11. 册上. p.224. 睿宗元年 7月 庚寅.

(53) ibid. 卷 12. 册上. p.249 睿宗元年 3月 丁酉.

(54) ibid. 卷 37. 册上. p.743. 忠惠王 5年 6月 乙卯.

(55) ibid. 卷 34. 册上. p.699. 忠肅王 元年 閏 3月 壬申.

(56)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1919) 册上. p.317. 陝川般若寺元景王師碑.

(57) 徐居正. 東文選. (서울, 慶熙出版社, 1967) 卷 129. p.565.

(58) ibid. 卷 129. p.562.

(59) 李衡. 牧隱集. 高麗名賢集. (서울, 景仁文化社, 1973) 册 3. p.955. 麗興郡夫人閔氏「金昂配閔氏」墓誌銘.

(60) 李仁老. 破闕集. op. cit. 册上. p.1.

의 記錄에서 忠烈王24年 忠宣王이 秘書監으로 改稱하고 判事를 滅하고, 丞을 從6品으로 降等, 郎을 從7品으로 하며 御書留院官을 校勘에 併合시켰다는 記錄이 있다. 留院官은 御書院의 官員인 것이다. 御書院은 文宗時에 知院事, 副知院事, 判院兼押院 2員, 檢討官 2員, 留院官 2員, 知書 2員, 書手 25員을 두기 시작했던 것이다.⁽⁶¹⁾ 여기에서 實際 御書院의 官員을 살펴 보기로 한다.

表 10. 御書院의 官員

年 度	職 名	姓 名	典 據
肅宗(1096—1105)	御書校書郎	金 誠	追補 p.356
睿元(1106)	判御書院事	李 頤	高麗史 卷 12 上 p.252
睿5(1110) 後	御書留院官	元 汎	總覽 上 p.361
睿(1110—20)	御書檢討官	韓元卿	追補 p.114
睿(1105—47)	御書檢討官	金 誠	總覽 上 p.357
睿9(1114)	御書檢討官	林有文	高麗史 卷 13 上 p.275
睿10(1115) 以前	御書檢討官	李 瑶	追補 p.90
睿14(1119)	判御書院事	崔 賢	高麗史 卷 14 上 p.292
睿(1105—47)	御書 校勘	韓惟忠	追補 p.114
毅1(1146)	御書檢討官	元 汎	總覽 上 p.361
毅7(1153)	御書檢討官	朴景山	追補 p.143
毅10(1156) 以前	御書檢討官	張鴻羽	追補 p.269

高麗史 職官에서는 知院事が 最高官으로 나타났으나 表10에서는 判院事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最高官으로 보인다. 秘書省도 判事が 最高官이며 御書院도 判事が 最高官이므로 同級의 別個機關인 것이다.⁽⁶²⁾ 御書院은 文宗時에 定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靖宗11年的 御書閣이란 文宗보다 앞선 시기이므로 여기의 御書閣은 御書院으로 보기는 어렵고 秘書省 藏書庫의 異稱이 아닌가 한다. 肅宗時의 御書房은 이미 御書院이 設置된 이후이고 秘書閣과 나란히 稱해졌으므로 御書院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記錄上 御書院의

(61) 鄭麟趾, op. cit. 卷 76, pp. 671—2.

(62) 이에 대하여 文宗(1046—83) 末年에 秘書省을 御書院으로 改革했다고 보는 見解와는 相反된다. <白麟, 韓國圖書館史研究. (서울, 韓圖協, 1969) p.27>.

官員은 毅宗時까지만 나타났으나 그 以後에 어찌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高宗41年 御書院 官員이 秘書省에서의 輪番迭宿하는 것을 禁한 것과 忠烈王24年 秘書監으로 改編했을 때 그 校勘은 御書留院官 2員이 兼任하도록 定한 것으로 보아 麗末까지 存續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秘閣과 秘書閣의 問題이다. 위의 高麗史 記錄에서 文宗時에는 모두 秘閣으로 稱해졌으며, 肅宗時에는 秘書閣으로 稱하고 있다. 앞의 記錄에 의하면 秘閣, 秘書閣은 書籍과 板木의 保管만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秘閣과 秘書閣은 同一稱으로 看做할 수 있다. 이에 秘閣의 位置를 살펴볼 必要가 있는 것이다. 韓在濂은 延英, 秘閣에는 책 香氣가 나고 繖氣를 絶했다⁽⁶³⁾고 한 바 있어 延英殿과 秘閣은 각각 다른 宮內의 書殿임을 나타내고 있다. 仁宗16(1138)年に 여러 殿閣과 宮殿名을 고쳤을 때 다른 殿閣은 改名했으나 慶寧殿과 秘書閣만은 고치지 않았다⁽⁶⁴⁾고 한 바 있어 前間恭作은 이에 根據하여 清謙閣, 實文閣, 天章閣의 三閣을 合稱한 것이 秘書閣이라고 指摘하였다⁽⁶⁵⁾. 이에 白麟은 肅宗以前에는 秘閣이라 하였고 睿宗時에 文庫의 制度가 整備되면서 清謙, 實文, 天章의 閣號로 定한 것이라고 보았다.⁽⁶⁶⁾ 그러나 韓在濂은 臨川閣에서 實文, 清謙, 秘閣, 臨川閣은 모두 藏書處⁽⁶⁷⁾라고 한 것으로 보아 實文閣, 清謙閣, 天章閣을 合친 것이 秘閣은 아닌 것이다. 또한 金緣의 清謙閣記에 睿宗이 儒術을 崇尚하고 華風을 樂慕하여 大內의 側이며 延英殿의 北이며 慈和殿의 南쪽에 實文閣, 清謙閣을 別創하였다⁽⁶⁸⁾고 하였는데 秘閣은 複雋 前代인 文宗時의 記錄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同一한 機構이면 別創이라고 表現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確認되는 것은 秘閣이 宮內의 藏書處라는 점이다.

秘書省의 位置에 대한 記錄은 아직까지 發見되지 않고 있어 다만 그 機能으로 미루어 推測할 수 있을 것이다. 秘書省은 斋醮祭享의 文書를 管掌했으

(63) 韓在濂. 高麗古都徵.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2) p.1. 中京懷古詩.

(64) 鄭麟趾. op. cit. 卷 16. 冊上. p.342. 仁宗 16年 5月 庚戌.

(65) 前間恭作. 開京宮殿簿. 朝鮮學報 제26輯 (昭和 38.1) pp.25—26.

(66) 白麟. op. cit. p.30.

(67) 韓在濂. op. cit. p.72.

(68) 金宗直編. 東文粹. 篲本 (年記本詳) 卷 1. 版 4—7. 清謙閣記.

므로 每月 一名씩 入直해서 沐浴齋素하고 있다가 月末에 나왔던 것이다. 이 輪番迭宿하는 豹直은 朝鮮朝 奎章閣臣도 행해서 摄文院에서 直提學이 2日, 直閣과 待敎가 3日, 做庶는 直閣 20日, 待敎가 30日씩 했던 것이다.⁽⁶⁹⁾ 이 神聖한 職務인 豹直을 高麗朝에서는 當代의 名臣이 任命되던 翰林院, 實文閣, 同文院, 御書院의 官員도 할 수 없었고 다만 秘書省의 官員만이 遂行했던 것이다. 따라서 翰林院, 實文閣의 閣臣도 秘書省에 收藏되었던 齋醮祭享의 文書에 接近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秘書省의 位置는 매우 安全하고 管理하기 좋은 것이어야 했다. 朝鮮朝에서도 奎章閣의 豹直所인 摄文院은 宮내에 있었다. 따라서 高麗朝에서 至重한 齋醮祭享의 文書를 宮外에 保管했을리 없을 것 같다. 따라서 高麗의 秘書省은 宮外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宮내에 있었을 것이다.⁽⁷⁰⁾ 奎章閣과 比較하면 内閣인 奎章閣은 圖書의 保存, 編次, 講學을 任務로 하였고, 江都外閣은 書籍의 保存만을, 外閣인 校書館은 書籍의 印行, 香祝, 印篆에 관한 일을 管掌한 것이므로 秘書省은 内閣인 奎章閣과 外閣인 校書館을 합친 것과 같은 것이었으며 秘閣은 内閣의 一部인 皆有窓, 閣古觀, 西庫, 奉謨堂을 합친 것과 같은 機構였을 것으로 推想할 수 있다. 또한 宋代에 秘閣이 崇文院 中堂에 있었던 것과 같이 高麗의 秘閣도 秘書省의 屬司로 藏書반을 擔當했던 것으로 推測할 수 있으나 斷定을 내릴 根據는 아직 없다. 그리고 記錄을 통해서도 秘閣의 官員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니 秘書省의 官員이 秘閣의 藏書를 管理했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結語

以上 叙述한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① 高麗의 秘書省은 前朝인 新羅의 制度를 크게 採擇했던 것으로 보이자

(69) 奎章閣, 奎章閣志, [正祖 8(1784)] 奎章閣 第3輯 (1979) p.214.

(70) 여기에서 秘閣은 宮내의 藏書所로 생각하는 것은 白麟의 見解와 一致하나 秘書省이 閣外에 있었다는 見解와는 相反된다. <白麟, op. cit. p.26>

- 않고 中國에서의 官名과 職名을 많이 採擇했음을 볼 수 있었다.
- ② 秘書省은 内外의 狀況에 따라 적어도 15次에 걸쳐 改編되었고,
- ③ 從來의 說파는 달리 文宗5年 秘書省으로 改編된 以來 典校署 期間반을
除外하고 麗末까지 判事を 設置했었다.
- ④ 그러나 從來의 說파는 달리 忠烈王24~34年 사이에도 監, 少監이 있었고,
- ⑤ 權知校勘은 典校署에 반 있었던 官員이 아니고 恭愍王5年 以前의 典校寺
에서도 있었다.
- ⑥ 典校署에서 典校寺로의 改編은 忠宣王3年 이전으로 좁힐 수 있고
- ⑦ 秘書省의 機能은 經籍, 祝疏를 管掌하는 것이며 構體의 으로는 齋醮祭享
의 文書, 書籍의 購入, 交換, 編書, 校書, 刊書, 藏書, 侍講, 製誥의 業
務를 遂行하였다.
- ⑧ 秘書省과 御書院과의 關係는 同級의 別個機關이며, 御書院도 文宗時에
設置되어 麗末까지 存續되었다.
- ⑨ 秘書省의 位置는 齋醮祭享의 文書를 管理하였으므로 매우 安全하고 管理
하기에 좋은 뜻이어야 했으며 따라서 宮내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⑩ 秘閣은 宮내에 位置했으나 秘書省과의 關係는 宋代의 秘閣이 崇文院의
屬司였던 것처럼 秘書省의 藏書庫였을 可能성이 같다.
- 이 秘書省의 機能의 一部는 朝鮮初에 校書館으로 繼承되었던 것이다.

A Study on Pisōsōng(秘書省) in Koryō Dynasty

by Pae Hyǒn-Suk*

In the study of library history in our country, the history of the Koryō Dynasty is very important. The Pisōsōng, the first library to be operated by the government, was founded in 995 A.D. Although research about the Pisōsōng indicated that it was located outside the palace the author felt that further investigation was needed. Might not the library be located inside the palace? For this reason, this study examined 1)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isōsōng, 2) changes in its structure and organization, 3) its organization and personnel, 4) its function and, 5) its relation to the Pigak (秘閣) and the Ōsōwōn (御書院).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Pisōsōng was changed and reorganized 15 times by the end of the Koryō Dynasty.

2) its functions were keeping official documents and books, buying, exchanging, publishing, editing, revising books, writing official documents for the king and, as a place to discuss ideas and sometimes to deliver lectures to the king.

3) Ōsōwōn was another institute which was equivalent in its function and role to the Pisōsōng.

4) The Pisōsōng was in all probability located inside the palace because there were very important books in it. It is assumed that its location should be a secure place. Also this would enable the library to be managed more conveniently.

5) The Pigak in the Koryō Dynasty must have been located inside the palace as the Piko (秘閣) in the Sung (宋) Dynasty in China was.

* Dept. of Library Science, Kemyeong Junior College.